

신문방송국 규정

시행 : 2017.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의 창학 이념에 입각하여 경희정신을 함양하고 대학문화를 창달함과 동시에 올바른 대학 언론을 정립함으로써 건전한 학풍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희대학교 부속 대학주보사, 대학생활사, 대학의소리방송국(이하 3개 기관을 통칭하여 '대학언론사'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학언론사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3조(사업) 대학언론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주보사: 「대학주보」 발행
2. 대학생활사: 「The University Life」 발행
3. 대학의소리방송국: 교내 방송, 인터넷 방송
4. 기타 학술 및 문화 사업

제2장 기구와 업무

제4조(구성) ① 대학언론사에 발행인, 편집인을 둔다.

② 대학언론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신문방송국을 둔다.

제5조(발행인) ① 총장은 대학언론사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총장은 대학주보와 The University Life의 발행인이 된다.

제6조(편집인) ① 신문방송국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언론사의 편집인이 된다.

② 편집인은 총장을 대신하여 대학언론사의 신문·방송 제작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옴부즈맨위원회) ① 신문방송국에는 옴부즈맨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는 대학언론사의 신문·방송 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신문방송국장은 그 임기동안 옴부즈맨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본교 학부 재학생, 본교 재직 직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신문방송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2.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3. 학부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⑤ 위원장은 필요시 대학언론사의 학생임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 수당은 본교의 제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신문방송국의 구성) ① 신문방송국에는 일반사무를 담당할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두며, 대학언론사별로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편집간사는 신문과 방송의 기획, 편집 및 제작 등에 관하여 편집인을 보좌한다.

제9조(학생임원) ① 대학주보와 The University Life에는 편집장 1인과 필요한 부장을 둔다. 대학의소리방송국에는 실무국장 1인과 필요한 부장을 둔다.

② 편집장, 실무국장 및 부장은 학생 기자 및 국원 중에서 선임되며,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인의 제청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장 및 실무국장은 직전 임기의 편집장 및 실무국장의 제청으로 편집인이 임명한다.

제10조(기자 및 국원) ① 대학언론사에는 필요한 학생 기자 및 국원을 둔다.

② 신문 및 방송 제작을 위해 대학원 학생 편집위원을 약 간명 둘 수 있다.

제11조(기자 및 국원의 선발) 학생 기자 및 국원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발한다.

제3장 복지, 징계 및 재정

제12조(장학금) ① 학생 기자 및 국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기준은 학교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② 학생 기자 및 국원에게는 그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해외연수) 학생 기자 및 국원의 견문을 넓히고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학생 기자 및 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 또는 경고할 수 있다.

1. 본교 학칙 또는 제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2. 본 기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기타 편집인이 학생 기자나 국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재정) ① 대학언론사는 교비로 운영한다.

② 신문 및 방송 제작에서 발생하는 광고료, 기부금, 기타 수입은 기금으로 별도 적립한다.

제16조(보칙) ① 대학언론사별로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② 본 규정과 대학언론사별로 운영되는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주보 사규」, 「대학생활 사규」, 「대학주보편집자문위원회 규정」은 폐지하고 본 규정으로 갈음한다.